

##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1월 25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5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gim72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#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훈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.

발 의 자 : 이훈미, 이길호, 신경원  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  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.
- 나.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 「건축법」 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도록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가설건축물에 ‘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’ 신설 (안 제5조제2항 제2호)
- 나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(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2호)

## 3. 관련법령

- 「건축법」

군포시 조례 제 호

##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

제38조제1항제1호 및 2호 중 “9미터”를 각각 “10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가설건축물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9조(가설건축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학교시설사업 촉진법</u>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</p> <p>1. 높이 <u>9미터</u>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</p> <p>2. 높이 <u>9미터</u>를 초과하는 부분</p>	<p>제38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 <u>10미터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--- <u>10미터</u>-----</p>

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
② ~ ④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